

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변동성	결산	법 개정
1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○	○
2	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3	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○	-
4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6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-재간접형)	-	○	○	-
7	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	-	○	-	-
8	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-
9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10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-	-
11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12	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13	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14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	-	○	-	-
15	미래에셋법안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○	-
16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17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18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19	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○	-
20	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21	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22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2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24	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○	○	-
25	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	-	○	-	-
26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-	○	-	-
27	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28	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.0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○	○	-
29	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.0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○	○	-
30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-	○	○	-
31	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2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○	-
33	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○	-
34	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-
35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36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3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
- 4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19년 5월 17일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신설

펀드명	판매 보수(%)	선취 판매수수료(%)	환매수수료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C-P: 0.88 C-Pe: 0.44 C-P2: 0.78 C-P2e: 0.39	-	-

[참조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종류C-P	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다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
종류C-Pe	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다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
종류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종류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

2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3	-	12.53
미래에셋 QV 솔루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5	-	3.32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3.37	3.59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03	3.87
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5	5	4.3	3.47
미래에셋국공채전용 MMFA1 호(국공채)	6	6	0.02	0.02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3.98	3.93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1.74	1.72
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34	4.19
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3	3	14.91	14.31
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2.21	12.12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5 호(주식)	3	3	13.69	13.41
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1.67	1.66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 Focus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	4	9.59	8.47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84	17.46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3	3	12.4	13.12
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6	6	0.2	0.21
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3	3	13.44	13.56
미래에셋스마트롱숏 7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	5	5.31	4.94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	4	9.81	8.72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3	3	13.51	11.69
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5	5	4.21	3.98
미래에셋우리아이 3 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 G1 호(주식)	3	3	10.72	11.23
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	3	3	10.75	11.3
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3	15.72	12.01
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 H 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44.59	39.32
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25.02	25.93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2	2	18.2	18.2
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	3.86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1.77	1.74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5	-	4.36
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3	3	13.18	13.43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87	4.62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5.44	5.57

4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<집합투자규약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0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

	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(이하생략)	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(이하생략)
제45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 (좌동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9조(금전 차입 등의 제한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~2. (생략) <u><신설>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~2. (생략) 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5부. 2.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 에 관한 사 항 [의무해지]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

	<p>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</p> <p>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p>	<p>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</p> <p>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p>
--	--	--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